의안번호	제 33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김기창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19년 11월 26일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

(김기창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30

발의연월일 : 2019년 11월 26일
발 의 자 : 김기창, 이수완, 윤남진, 연종석, 오영탁, 서동학

1. 제안이유

화재진압,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나. 장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장례 지원을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장례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설치를 규정함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협　　의 : 소방본부 소방행정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19. 11. 12. ~ 2019. 11. 19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「소방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

2.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

3.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

4.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·훈련 활동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수반되는 직무 수행

제3조(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공무원

2.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

3.「병역법」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북도 내 소방관서에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

4.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충청북도 의용소방 대원

제4조(장례위원회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이라 한다)는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장례식의 구분

가. 충청북도장(葬)

나. 소방서장(葬)

다. 가족장(葬)

2.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

3. 장례식의 방법·일시·장소에 관한 사항

4.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

5.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장례 비용 지원) 도지사는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영결식 비용

2. 장례식 비용

제6조(집행위원회) ① 도지사는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지방자치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2. ~ 5. <생 략>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소방기본법]

제16조(소방활동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, 재난·재해,

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(소방지원활동) ① 소방청장·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 "소방지원활동"이라 한다)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산불에 대한 예방·진압 등 지원활동
2.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·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
3. 집회·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
4. 화재, 재난·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
5. 삭제 <2015.7.24.>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

제16조의3(생활안전활동) ① 소방청장・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(화재, 재난・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“생활안전활동”이라 한다)을 하게 하여야 한다.

1. 붕괴,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, 나무,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
2. 위해동물,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
3. 끼임,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
4.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

5.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

제17조(소방교육・훈련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비용발생 요인

○ 순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비용

3. 관련 조문

○ 조례안 제5조(장례비용 지원)

- 도지사는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영결식 비용
2. 장례식 비용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순직자 발생 1명 당 장례비용은 평균 45,758천원으로 예상

나. 추계의 전제 : 최근 5년간 전국 시·도 비용추계 집행 현황을 조사하여 평균 금액을 작성

다. 추 계 결 과 : 금45,758천원

라. 재원조달방안 :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, 순직사고 시 발생되는 금액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비비로 집행

【 참 고 (비용수반 조문 비용추계) 】

◇ **최근 5년간 전국 타 시도 비용추계 집행 현황 : 평균 45,758천원** (식대 등 부대비용 제외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평 균	괴산* ('19.6)	김포 ('18.8)	강릉 ('17.9)	울산 ('16.10)	평택 ('15.12)
총 비 용	45,758	36,924	46,742	44,952	46,708	53,464
장례식장	17,832	21,324	18,140	22,695	19,643	7,360
영결식장	27,926	15,600	28,602	22,257	27,065	46,104

*故 권영달 순직 장례비용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					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							
구·군비							
기 타 (예비비)		45,758	45,758	45,758	45,758	45,758	228,790